

(참 조)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95-3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95. 7.

제 출 자 : 달서구청장

(기획감사실)

1. 제안이유

-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복지행정의 강화를 위한 시범 보건복지 사무소 신설로 일부 기능이 쇠퇴한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·폐합하고 업무를 일부 조정 신설하여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함.

2.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

3. 주요골자

- 과 신설(안 제6조)
 - 사회과 + 가정복지과 ⇨ 사회과
- 업무조정
 - 자연보호(총무과 ⇨ 청소과)
 - 인위재난의 예방·수습(민방위과 신설)

4. 개정조례(안) : 따로붙임.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.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(총무국) 제2항중 “자연보호”를 삭제하고, 제7항중 “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” 다음에 “인위 재난의 예방·수습”을 신설한다.

제6조(사회산업국)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4항을 삭제하며, 제7항중 “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” 다음에 “자연보호”를 신설한다.

① 사회산업국에 사회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환경보호과, 청소과를 둔다.

② 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과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,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(생활보호대상자 제외),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, 고용촉진 훈련, 여성단체 지도 육성, 부녀·아동복지 법인 및 부녀·아동후생시설에 관한 사항, 묘지, 매·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,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: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5조(총무국) ① (생 략) ② 총무과는 서무, 의전, 보안 및 청사관리,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, 선거 및 국민투표, 출장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, 주민등록 및 인감, 새마을운동, <u>자연보호</u>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 ③~⑥(생 략) ⑦ 민방위과는 민방위 계획수립 및 실시, 민방위계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,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, 비상대책 업무, 병무 및 향토예비군,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<신설>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p>	<p>제5조(총무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<삭 제>..... ③~⑥(현행과 같음) ⑦인위재난의 예방·수습.....</p>
<p>제6조(사회산업국) ① <u>사회산업국에 사회과, 위생과, 가정복지과, 지역경제과, 환경보호과, 청소과를 둔다.</u> ② <u>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, 생활보호 및 구호,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직업보도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,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,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u> ③ (생 략) ④ <u>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여성단체 지도육성, 부녀·아동복지 법인 및 부녀·아동후생시설에 관한 사항, 매·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,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u> ⑤~⑥(생 략) ⑦ <u>청소과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,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, 분뇨·쓰레기수거,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검사<신설>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u></p>	<p>제6조(사회산업국) ① <u>사회산업국에 사회과, 위생과, 지역경제과, 환경보호과, 청소과를 둔다.</u> ② <u>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과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,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(생활보호 대상자 제외), 노동단체 지도육성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, 고용촉진훈련, 여성단체 지도육성, 부녀·아동복지법인 및 부녀·아동 후생시설에 관한 사항, 묘지, 매·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, 청소년 건전지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<삭 제> ⑤~⑥(현행과 같음) ⑦자연보호.....</p>

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

[제정 1995 · 1 · 28 조례 제330호]

개정 1995 · 3 · 3 조례 제332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두는 실·국 및 과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실·국의 설치)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, 문화공보실, 총무국, 사회산업국, 도시국을 둔다.

제3조(기획감사실) 기획감사실은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, 구의회 운영지원, 기구 및 정원, 예산, 법제, 감사 및 비위사건의 조사처리, 행정전산화 및 통신, 통계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4조(문화공보실) 문화공보실은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, 구정보도, 지방문화, 예술, 종교, 문화재보호관리,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5조(총무국) ① 총무국에 총무과, 시민과, 재무과, 세무과, 징수과, 민방위과를 둔다.

② 총무과는 서무, 의전, 보안 및 청사관리, 공무원 인사 및 후생복지, 선거 및 국민투표, 출장소 및 동행정 지도감독, 주민등록 및 인감, 새마을운동, 자연보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③ 시민과는 민원사무처리 및 민원상담, 호적 및 국적, 민원실운영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재무과는 국비·시비·구비회계 총괄, 지출, 물품, 국공유재산관리, 차량의 취득, 처분 및 운영,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, 구유건물과 그 부대시설의 영선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⑤ 세무과는 세무행정의 종합조정, 지방세부과, 세무조사, 세입에 관한 범칙사건처리, 부동산 평가 업무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징수과는 지방세징수, 세외수입총괄, 세입예산 및 결산, 지방세 체납세 관리 및 체납 정리, 구금고 감독, 기부금품모집 통제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⑦ 민방위과는 민방위계획수립 및 실시,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, 민방위시설 및 장비관리, 비상대책 업무, 병무 및 향토예비군,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6조(사회산업국) ① 사회산업국에 사회과, 위생과, 가정복지과, 지역경제과, 환경보호과, 청소과를 둔다.

② 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, 생활보호 및 구호, 노동단체 지도 육성 및 직업보도,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,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, 심신장애자 복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③ 위생과는 공중 및 식품위생의 종합계획 및 조정, 공중 및 식품위생의 지도감독,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, 공중목욕탕관리,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, 여성단체 지도육성, 부녀·아동복지법인 및 부녀·아동후생시설에 관한 사항, 묘지, 매·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,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⑤ 지역경제과는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조정, 상공업 진흥, 중소기업 육성, 연료수급, 공산품 품질관리, 농업행정의 종합계획, 양곡·축산 및 잠업,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환경보호과는 환경보전종합계획 조정,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조정, 배출시설 공해업소 지도단속, 환경오염원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⑦ 청소과는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조정, 오물처리허가 및 지도단속, 분뇨·쓰레기 수거, 화장실 개량 및 화장실 정화시설 검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7조(도시국) ① 도시국에 도시개발과, 건축과, 건설과, 지역교통과, 지적과를 둔다.

② 도시개발과는 도시계획, 개발제한구역관리, 도시정비 및 재개발계획수립 및 추진, 광고물 관리, 임업행정의 종합계획, 산림보호육성, 공원개발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③ 건축과는 건축허가, 무허가 건축물 단속, 건축자재생산업에 관한 사항, 건축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④ 건설과는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·이용 및 개발, 토목건설사업계획의 수립시행, 자연해방재대책, 하천·공유수면 유지관리, 하수도 사용료과징, 건설사업 보상업무, 증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⑤ 지역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, 장·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, 투자재원 확보, 불법주·정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, 화물자가용자동차 운송 인·허가, 자동차 운송사업 알선 허가, 택시운송사업 시설확인 및 지도감독, 자동차관리사업 허가, 관광행정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⑥ 지적과는 지적공부 보존관리,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, 이동저 검사 및 정리, 지적측량기초점 보존 관리,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 감독, 택지소유 상한제 및 개발이익 환수제 운용, 개별지가 조사, 토지거래규제등 업무, 부동산 중개업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.

제8조(계의 설치 및 사무분장) ① 실·과 및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.

②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개정 1995. 3. 3 조례 제332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